

직장에서의 장애 편의 제공

안내문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고용 보호

캘리포니아 법은 장애인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은 다음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 구직자
- 직원
- 인턴
- 자원봉사자

이러한 보호는 직원이 5명 이상인 민간 고용주와 모든 공공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은 직장에서 합리적 편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리적 편의란 장애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작업장이나 직장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편의 제공 필요성 입증

합리적 편의가 필요한 사람은 법에서 인정하는 장애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¹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합리적 편의를 받으려면, 주요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 생활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이며, 여기에는 일하거나 경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각하기
- 의사소통하기
- 걷기
- 들어 올리기 및
- 집중하기

장애가 다음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해 상태임(예: 암)
- 가끔만 발생함(예: 천식 또는 편두통)
- 약물로 치료 가능함(예: 당뇨병에 인슐린 사용)
- 일시적임(허리 부상, 팔 골절)

편의 요청 및 상호 절차

고용주는 사람들이 편의를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단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장이나 근무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 편의 요청입니다. 편의를 언제 요청할 수 있는지 또는 몇 개의 편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편의는 고용 기간 중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요청할 때 구직자와 직원은 장애 관련 필요와 요청한 편의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그 편의가 업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용주는 합리적 편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편의 요청을 받은 후 고용주는 상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² 이는 고용주와 장애인이 요청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입니다. 요청한 대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선의로 상호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합리적 편의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합리적 편의는 개인의 구체적인 장애 관련 필요에 대응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편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내견 등 보조동물이 작업장에 있도록 허용
- 낭독자 또는 통역사 제공
- 직원을 다른 작업장으로 전근
- 직무 과제 재구성

1 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상태의 예에는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상태, 절도광(훔치고 싶은 통제할 수 없는 충동), 현재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물질 사용 장애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거 약물 사용으로 인해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정신활성 물질 사용 장애가 있고 더 이상 불법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Cal. Code Regs., tit. 2, § 11069

직장에서의 장애 편의 제공

안내문

- 근무 일정 변경
- 시험, 교육 자료 또는 정책 조정
- 추가 교육 제공
- 직원의 재택근무 허용

보충 의료 문서

고용주는 상호 절차 중에 때때로 의료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의료 제공자가 의료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의사
- 외과의
- 치과의사
- 임상심리학자
- 결혼 및 가족 치료사
- 침술사
- 조산 간호사
- 임상 사회복지사
- 기타 의료 제공자³

고용주가 장애를 알지 못하거나 장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료 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제공자의 서신 또는 소견서
- 상세 인증 양식⁴
- 간단한 인증 양식⁵
- 요청 후 의료 제공자가 작성한 의료 질의 양식

고용주가 자체 의료 인증 또는 질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식은 법에 따라 고용주가 받을 권리가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의료 기록, 구체적 진단 또는 장애의 원인에 관한 정보 요청이 포함됩니다. 의료 문서가 불명확하거나 고용주에게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상호 절차는 계속됩니다.

장애 또는 편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고용주는 의료 문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이동 장애가

있는 사무직 근로자가 자신의 작업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조절식 책상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의료 문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편의 제공 승인

가능한 경우 고용주는 지체 없이 편의를 승인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상호 절차 중에 고용주와 편의를 요청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편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편의를 요청한 사람의 선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효과적인 편의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편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⁶ 고용주는 장애 관련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편의를 수락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편의 요청 거부

고용주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만 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구직자 또는 직원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장애가 없는 경우,
2. 편의를 제공하면 해당 직무의 필수 기능⁷이 없어지는 경우,
3. 편의가 고용주에게 상당한 어려움과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과도한 부담), 또는
4. 편의가 요청자 및 직장 내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고용주는 편의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결정할 때 자신에게 제공되는 구체적 자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업체 규모
- 직원 수
- 사업체의 기능
- 편의 비용

3 Cal. Code Regs., tit. 2, § 11065(i)

4 CRD의 합리적 편의 요청 패키지 참조

5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또는 Federal Medical Leave Act에 따른 휴가 및 임신 장애 휴가, 전근 또는 기타 합리적 편의와 관련된 CRD의 의료 제공자 인증 양식 샘플을 참조하십시오.

6 Cal. Code Regs., tit. 2, § 11068(e)

7 필수 기능은 특정 직무의 주요 및/또는 기본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직무가 존재하거나,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거나, 제한된 수의 직원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업무는 필수적입니다. Gov. Code § 12926(f).

직장에서의 장애 편의 제공

안내문

고용주가 해당 편의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더라도, 상호 절차를 계속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 또는 구직자와 함께 모두에게 적합한 편의를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 위해 요청에 대한 응답을 무시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 위해 직원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구직자나 직원이 합리적 편의를 요청한 후 그들을 부정적이거나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경우, 이는 불법 보복일 수 있습니다.⁸ 보복은 편의가 승인되었는지 거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력 후 근무 휴가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폭력 행위의 피해자인 직원 또는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인 직원에게, 근무 중 직원의 안전을 위해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합리적 편의에는 안전 조치 시행, 재배치, 변경된 일정 또는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폭력적 위협, 위험한 무기가 관련된 행위 또는 기타 해당되는 폭력 행위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타 편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⁹

불만 제기

장애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면 CRD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권부

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

수신자 부담: 800.884.1684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711)

합리적 편의가 필요한 장애가 있습니까? CRD가 불만 제기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의 번역본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lcivilrights.ca.gov/posters/employment

⁸ CRD의 직장 보복 안내문에서 보복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⁹ Gov. Code § 12945.8(e)(1)-(8).